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49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일
제 출 자 : 강 서 구 청 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전부 개정 후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2017. 7. 26.「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되어 상위법령 맞게 개정하고자 함.

다. 의료관광 클러스터조성 시범사업 특화사업 수를 중소벤처기업부 특구 변경 고시 제2016 - 74호, 제2018 - 31호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나. 정부 부처장 명칭 변경(안 제2조)

중소기업청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다. 의료관광 클러스터조성 시범사업 특화사업 수 변경 : 19개 삭제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018. 12. 31.개정)

「정부조직법」(2017. 7. 26.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6 - 74호, 제2018 - 31호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7. 10.~7. 30.)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제외대상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2조 제1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을 “제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례법」제3장”을 “「특례법」제2장제2절”로 한다.

제4조 중 “「특례법」제22조”를 “「특례법」제33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례법」제32조”를 “「특례법」제44조”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화사업 추진 시「특례법」제46조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제8조제5항 중 “주재하며”를 “주관하며”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19개 특화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최하고”를 “열고”로, “개최한다”를 “연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제1항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특례법」 제3장에 규정된 규제특례 사항을 말한다. 3.・4. (생 략)	제2조(정의) ----------. 1.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 「특례법」제2장제2절----------. 3.・4. (현행과 같음)
제4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제4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구청장”이라 한다)은「도로교통법」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허준테마연계 사업 및 지역문화 특화사업(축제나 문화행사 시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통행금지 또는 제한조치) 추진 시「특례법」제22조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 「특례법」제33조 ----------.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구청장은 특구 구역 내에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특례법」제32조 규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제78조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1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제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특례법」제44조 ---------- 않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3항, 제27조 제	제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 제27조제3

3항, 제3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화사업 추진 시 「특례법」 제34조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항,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화사업 추진 시 「특례법」 제46조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장은 특구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 위원장은 소속 분과를 대표하고, 분과 회의를 주재하며 해당 분과별 특화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⑤ ---------- 주관하며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 구청장은 특구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특구협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
1. 4개 분야(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의료관광 기반 마련 사업,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의료관광 도시구현 사업) 19개 특화사업 추진	1. ---------- 특화사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① 특구협의회 회의	제12조(회의) ① ----------

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열고---------- ---------- 연다.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범위 안----------.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중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성 명	보건소 의약과 (담당 : 보건9급 노영우)
연락처	02-2600-5984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사유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개정되어, 인용 법령 명칭 변경

○ 정부부처 명칭 변경사항 반영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 변경 고시에 따라, 의료관광 클러스터조성 시범사업 특화사업 수 개정

□ 주요내용

○ 인용 법령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정부 부처장 명칭 변경(안 제2조)

중소기업청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의료관광 클러스터조성 시범사업 특화사업 수 변경 : 19개 삭제 (안 제11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고시 변경사항에 따라 인용 법령과 정부 부처장 명칭, 시범사업 특화사업 수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 가 번 호	2019 - 21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의약과	통보(조치)일	2019. 7. 30.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19A서울강서024			
정 책 명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의약과		
	담당자명	노영우	전화번호	02-2600-5984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담당자명	최은영	전화번호	02-2600-6762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19년 07월 22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19년 07월 31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08월 01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약칭: 지역특구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617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지역특화발전특구) 042-481-1604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규제자유특구) 044-865-9719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를 지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조례의 제정)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특화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도시·군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에 관하여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화특구계획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화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전부개정법률 제1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시행 2018. 6. 8] [법률 제15624호, 2018. 6.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2-2100-4411

제44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7. 7. 26.]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경호실장의 소관사무	대통령경호처장
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7항에 규정된 사무	소방청장
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3조제2항에 규정된 사무	해양경찰청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소관사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4조에 규정된 사무 및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3조제2항에 규정된 사무(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승계한 사무를 말한다)	해양경찰청장
중소기업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4조에 규정된 사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국민안전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자치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중소기업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금융위원회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16-7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중소기업청장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ㅇ 명칭 :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특구
   - ㅇ 위치(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공항대로 일원(1,810,035㎡)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 ㅇ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를 위한 특구 인프라확충을 위해 사업변경 사항 반영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ㅇ 의료관광 클러스터조성 시범사업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신규:서울스타병원 신축)
   - ㅇ 의료관광 기반마련사업
   - ㅇ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 ㅇ 의료관광 도시구현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ㅇ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등 8개 단위특화사업자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ㅇ 시행기간 : 2015~2018(변경없음)
   - ㅇ 재원조달 : (종전) 719.6억 원 → (변경) 799.6억 원
   - ㅇ 시행방법 : 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종전특례 중 법 제32조 특례에 대하여 적용사업(신규 세부사업) 추가
   - 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ㅇ 관련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7) 또는 서울시 강서구청 의약과(02-2600-5994)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3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특구」,「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 명칭 :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특구」
   - ○ 위치(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공항대로 일원(1,810,035㎡)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 특구의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 및 기반조성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 의료관광 클러스터조성 시범사업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세부사업(신규 : 청계병원 신축)
   - ○ 의료관광 기반마련사업
   - ○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 ○ 의료관광 도시구현사업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등 8개 단위특화사업자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 시행기간 : (종전) 2015년 ~ 2018년 → (변경) 2015년 ~ 2023년
   - ○ 재원조달 : (종전) 799.6억원 → (변경) 1,028.6억원
   - ○ 시행방법 : 변경 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특례 유지
   - ○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 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신규 세부사업 추가
   - ○ 법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 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의약과(02-2600-5994)에서 열람할 수 있음.